

내포신도시 모아미래도 메가시티2차 일반공급 구비서류 안내

■ 구비서류 [서류제출 기간 : 2022.03.05.(토) ~ 2022.03.11.(금) / 장소 : 당사 견본주택]

| 구분 | 당첨구분 | | 해당서류 | 발급 기준 |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|
|--------------|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|
| | 가점제 | 추첨제 | | | |
| 공동 서류 | ○ | ○ | 신분증 | 본인 | ·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 (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) |
| | ○ | ○ | 인감증명서 | 본인 | ·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 (대리 발급분 불가 / 용도 : 주택공급 신청용) 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 불가 |
| | ○ | ○ | 인감도장 | 본인 | ·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상 인감도장 날인 및 대조 |
| | ○ | ○ | 주민등록표 등본(상세) | 본인 | ·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전체포함"으로 발급 |
| | ○ | ○ | 주민등록표 초본(상세) | 본인 | ·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주소변동 사항·사유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전체포함"으로 발급 |
| | ○ | ○ |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| 본인 | ·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 |
| | ○ | ○ | 출입국사실증명원 | 본인 | ·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4조제5항에 의거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는 필수 ·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-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|
| 추가 서류 (해당자) | ○ | | 주민등록표 등본(상세) | 배우자 | ·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(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) |
| | ○ | | 주민등록표 초본(상세) | 직계존속 | ·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(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) |
| | ○ | | | 직계비속 | ·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[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] |
| | ○ | |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| 배우자 | ·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(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)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 전부공개 "상세"로 발급 |
| | ○ | | | 직계존속 | ·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분리 된 경우 |
| | ○ | | 출입국사실증명원 | 세대원 | · 부양 가족 수로 산정한 경우 ·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-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|
| | ○ | |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| 본인 | ·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점수를 산정한 경우 |
| | ○ | | | 직계비속 | ·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|
| | ○ | ○ | 복무확인서 | 본인 | ·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6개월 이상 가입하고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 받으려는 경우 |
|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| ○ | ○ | 무주택 소명 서류 | 해당자 | ·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(가옥대장등본 포함) ·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· 소형·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(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) ·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|
| | ○ | ○ |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| 해당자 | ·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서류 |
|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| ○ | ○ | 인감증명서 | 청약자 | ·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 (대리 발급분 불가 / 용도 : 서류제출 위임용) 단,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(서명인증서)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|
| | ○ | ○ | 인감도장 | 청약자 | ·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|
| | ○ | ○ | 위임장 | 청약자 | · [당사 양식] 견본주택에 비치,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|
| | ○ | ○ | 신분증, 인장 | 대리인 | ·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 (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) |

※ 상기 제증명서류는 **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2022.02.10) 이후 발행분**에 한합니다.

※ 주민등록표 등·초본 발급 시 '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, 배우자 관계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'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'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※ 정당한 당첨자(적격 여부)를 판명하는 과정에서 **사업주체의 추가 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.**

※ 상기 내용은 '주택공급에 관한 규칙' 등 관련 법규 및 '국토교통부지침'에 근거하여 작성한 내용으로 내용이 상이한 경우 관련법규 및 '국토교통부지침'이 우선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.